

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

2026년 「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7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1. 총 괄

- ☐ (사업명) 2026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
- ☐ (사업내용)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국정과제 관련 의제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, 공론화, 숙의, 사회적 합의 등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- ☐ (지원기간) 보조금 교부결정 시 ~ '26.12월까지
- ☐ (지원대상)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
- ☐ (지원예산) 2,060백만원
 -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보조
 - 지원한도는 광역 자치단체는 10천만 원, 기초 자치단체는 5천만 원
 - 광역-기초 공동의제·사업 추진 시 4천만 원 범위 내 추가지원

<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별 국비 보조율 >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광역	50% 미만	55%
	50% 이상 70% 미만	50%
	70% 이상	45%

구분	재정자주도	보조율
기초	60% 미만	85%
	60% 이상 70% 미만	80%
	70% 이상	75%

2. 신청 기간 및 방법

- ☐ (신청기간) '26. 2. 27.(금) ~ '26. 3. 18. (수) 18:00까지
- ☐ (제출서류) 신청서 1부, 사업개요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운영예산서 1부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 1부 등
 - * 별첨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작성
- ☐ (신청방법) 온나라 공문(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) 제출

3.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(우선 지원)

- ☐ 공통 의제 추진
 - 전국 공통 의제를 1건 이상 추진하여 전국적 논의를 형성함으로써 중앙 정책 및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,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

< 전국 공통 추진 의제 >

❖ 다음 4개 중 1~2개 선택

- 위험격차 해소 (小사업장 길목잡기, 산업재해 예방, 안전문화 확산 등)
- 공짜노동 근절 (임금체불 근절, 포괄임금 금지, 체불 예방인식 개선 등)
- 실노동시간 단축 (워라밸+4.5 도입 등)
-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 만들기 (정주여건 개선, 복지향상, 공정임금 등)
- 노동절 명칭 복원 계기 노동 존중 문화 확산 (5월1일 전후)

❖ 세부 추진 사항

- 선택한 의제 관련 지역 현황 조사 및 연구, 협의체 또는 워킹그룹 구성·운영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, 지역 내 공론화, 의제 선정 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·숙의, 갈등 조정, 공동선언 및 협약,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, 정책반영, 시범사업 추진 등

- ☐ 광역-기초 연계 및 협력 지원
 - 광역-기초 연계 의제발굴 등 사회적 대화 추진 시 광역에 40백만원 별도 지원하고, 성과 평가하여 익년도 광역-기초 연계 지원 시 반영

< 광역-기초 연계 재정지원 조건 >

- 광역-기초 공동의제를 설정, 광역이 광역-기초 공동사업계획을 수립·일괄 신청
 - 광역은 조정·컨설팅·성과관리, 기초는 세부 집행 주체로 참여
 - 광역 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기초지자체 70% 이상 참여
- 광역-기초 협력을 위한 협의체(분과) 구성 必, 광역-기초 합동회의 정례화
 - 분기별 광역-기초 협의체(분과) 운영
- 광역-기초 연계 수준, 공동 선언·협약 체결 등 별도 지표 마련하여 성과 평가

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대화 지원

- 지역은 산업구조(조선·자동차·건설·IT·농업 등)가 상이하고, 기업 규모 분포, 청년 유출 정도, 외국인 노동자 비중 등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제 설정도 매우 중요
-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해 선제 대응하여 사후 분쟁·행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

4. 선정 심사 및 결과 안내

□ 선정 심사

-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지자체 및 사업과 지원액 결정
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예산산정의 합리성, 협의회 운영실적,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 결과 등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
- 필요시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
-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, 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

□ 선정결과 안내

- 선정 심사('26. 3월말) 이후, 지자체에 선정 여부 개별 공문 통보

5. 기타

- 사업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
 -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「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,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
-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로 전화 및 이메일 연락
 - 전화번호: 044-202-7601, 이메일: vokkin@korea.kr